

뉴에듀케이션칼리지 원칙

[시행 2024.2.1.] [2024.1.3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기관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사회교육 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문화적 의식을 높여, 지속적인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30.>

제2조(명칭) 동덕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명칭은 뉴에듀케이션칼리지라 한다.<개정 2024.1.30.>

제3조(소재지) 본 기관은 동덕여자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24.1.30.>

제4조(교육과정) 본 기관에는 학점은행제과정, 전문가과정, 지도사과정, 일반교양과정, 직업훈련과정 및 기타 필요한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6., 2024.1.30.>>

제5조(정원) 각 과정별 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6조(수업) 본 기관의 수업은 주, 야간으로 한다.<개정 2024.1.30.>

제7조(교육장소) 본 기관의 교육장소로는 교내시설로 하며 필요시에는 교외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1.30.>

제2장 조 직

제8조(구성) ① 본 기관에는 원장, 학사업무를 수행할 교학과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6., 2024.1.30.>

② 원장은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한다.

제8조의2(강사) ① 본 기관에는 상근강사 및 시간강사를 두며,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12.6., 2024.1.30.>

② 강사의 위촉 등 강사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2.6.>

제8조의3(직원) ① 직원은 대학의 제규정에 따른다.

② 원장은 전항과 별도로 계약직 직원을 임면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제3장 입학 및 등록

제9조(입학자격) 본 기관의 입학자격은 연령 및 학력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 및 학력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제10조(입학지원) 본 기관에 입학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제11조(입학사정) 각 과정의 입학사정은 서류전형 및 면접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전형을 행하되,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따른 전형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2조(학습비)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내에 학습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8.29.>
③ 삭제

제4장 교육과정

제13조(수업연한) 본 기관의 과정별 수업연한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30.>

제14조(설치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 ① 본 기관의 설치교육과정에 대한 편성과 과정별 평가에 관한 시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5조(이수원칙)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이수원칙은 출석 또는 과목성취에 대한 평가로써 한다. 단, 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교육생중 근면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과목이수) 교육과정별로 개설된 교육과목 중 신청한 과목별 출석이 80% 이상일 때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단, 과목 성취도를 가늠해 보기 위해 해당과목 교수는 별도의 평가 또는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소정평가 기준은 60%이상으로 한다.

제18조(평가기준) ① 학점은행제 과정의 학업성취도 평가비율은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기타 과정의 학업성취도 평가비율은 과정별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공개강좌) 본 기관에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4.1.30.>

제20조(학점단위) 학점인정 강좌 및 학점기준은 2주 이상 개설되는 과정이며, 기본적으로 15시간을 기준으로 1학점을 부여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1조(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본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4.1.30.>

제2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의결은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본 기관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24.1.30.>

- ①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 ②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④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⑤ 삭제
- ⑥ 교육과정별 학습비에 관한 사항
- ⑦ 삭제
- ⑧ 상근강사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6.>
- ⑨ 기타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개정 2024.1.30.>

제6장 재 정

제25조(재정) ① 본 기관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2.8.29., 2024.1.30.>

- ② 본 기관의 회계업무는 본 대학의 회계업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8.29., 2024.1.30.>

제26조(회계년도) 본 기관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의 회계년도에 따른다.<개정 2022. 8.29., 2024.1.30.>.

제7장 보 칙

제27조(시행세칙) 본 기관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30.>

제28조(준용규정) 본 기관 원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덕여자대학교의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30.>

부 칙

1. (시행일) 이 원칙은 1991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원칙은 199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원칙은 1998년 10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원칙은 1999년 2월 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원칙은 2003년 2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원칙(제1조, 제2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원칙(제8조)는 2006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원칙(제17조)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원칙(제8조①항,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⑤항 및 ⑦항 내지 ⑨항)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7.>

이 변경 원칙은 2016년 1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6.>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8.29.>

이 변경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30.>

이 변경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